

의안번호	2218367
의 퇴 인	김선민 의원
회 답 일	2026. 7. 3.
추계번호	26C2298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원자폭탄 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하여 장례비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45억 2,820만원(연평균 49억 560만원) 이상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례비 지원 (안 제14조2)	144.4	141.2	138.1	135	132	690.7	138.1
외래진료비 지원 (안 제14조의3)	3,638	3,557	3,478	3,401	3,326	17,400	3,480
입원비 지원 (안 제14조의3)	597	583.8	570.8	558.2	545.8	2,855.6	571.1
건강검진비 지원 (안 제14조의3)	748.9	732.3	716.1	700.2	684.7	3,582.3	716.5
합계	5,127.9	5,014.3	4,903.2	4,794.5	4,688.3	24,528.2	4,90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 (장례비지원)	○ (제1항)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4조의3 (복지지원사업)	○ (제1항)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2.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 4.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 (제2항) 국가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17조의2 (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한 지원)	○ (제1항) 국가는 피해자의 친생자에게 제12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4조2 (장례비지원)	×	○ 관련 사업 실시 중([표 3] 참고)
2	안 제14조의3 (복지지원사업)	×	○ 관련 사업 실시 중([표 3] 참고)
3	안 제17조의2 (피해자의 친생 자에 대한 지원)	△	○ 일부 추계 － 주거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피해자 친생자 단체의 운영지 원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 합리적 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항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관 사업 예산안을 바탕으로 장례비지원(안 제14조의2)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안 제14조의3)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일부 추계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라 2026년 3월 원자폭탄 피해자의 친생자 현황([표 2]) 및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표 3])을 바탕으로 안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일부 추계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 친생자 현황은 2026년 3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되었음¹⁾

[표 2] 원자폭탄 피해자 친생자 현황: 2026년 3월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357	644	429	100	11	47	97	18	459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계
723	153	20	14	53	23	12	13	3,173

자료: 보건복지부

1) 원자폭탄 피해자는 2026년 3월 적십자사 등록 기준으로 1,510명이며, 그중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1,483명, 미소지자는 27명임

*원자폭탄 투하 당시 피폭자에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로, 건강수첩 소지자는 현행법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진료보조비만 지원한다.

- 개정안 재정수반요인(안 제14조의2, 제14조의3)과 관련된 사업은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현행 사업과 개정안 재정수반요인 비교

내용	산출식	예산안 (백만원)	재정수반요인
장제비	2.1백만원 × 5명	11	안 제14조의2
진료비	[외래] 34백만원(1,700건×20천원) + [입원] 56백만원(90건×620천원)	90	안 제14조의3
진료보조비	10만원×1,458명(회관외 거주)×12월 + 5만원×104명(회관 거주)×12월	1,812	
건강검진비	35만원 × 20명	7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운영	①인건비 1,519백만원 + ②생계비 364백만원 + ③운영비 286백만원	2,169	
원폭피해자협회 운영지원	9명×195만원×12개월	211	
대한적십자사 운영지원	①인건비 110백만원 + ②운영지원 22백만원	1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원자폭탄 피해자의 친생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관 사업 예산안을 바탕으로 장례비지원(안 제14조의2)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안 제14조의3)을 중심으로 일부 추계
-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은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될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장례비 지원(안 제14조의2, 안 제17조의2)

- 친생자 사망자 수와 장례 신청자 1인당 장제비 지원금을 곱하여 산출
- (사망자 수) 당해연도 사망자 수는 당해연도 친생자 수 대비 평균 사망률²⁾을 적용하여 산출
 - － 산출 결과, 2026년 사망자 수는 70명이므로 같은 해 친생자 수 현황(3,173명)에서 당해 사망자 수를 차감하여 2027년 친생자 수를 산출하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추계기간 내 연도별 친생자 수를 순차적으로 추계함
- (지원단가) 보건복지부가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제비 지원금 산출 가정에 활용된 장례 신청자 1인당 2.1백만원의 지원 금액을 준용하되, 추계 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
- 추계 결과, 원자폭탄 피해자 친생자가 사망한 때 장례비를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6억 9,070만원으로 추계

[표 4] 원자폭탄 피해자 친생자 장례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사망자 수(명, A)	69	67	66	64	63	—	—
지원단가(백만원, B)	2.1	2.1	2.1	2.1	2.1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A×B)	144.4	141.2	138.1	135.0	132.0	690.7	13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진료비 지원 사업(안 제14조의3, 안 제17조의2)

- 보건복지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 진료비 산출 내역을 바탕으로 외래진료와 입원으로 나누어 요양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산출방법) 연도별 친생자 수에 1인당 외래진료 및 입원 건수를 각각 곱하여 외래진료 및 입원 건수를 산정하고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 － (친생자 수) 2026년 3월 기준 친생자 수 현황과 장례비 지원 추계 시 산출한 값을 추계에 활용

2) 2026년 친생자 평균 연령(59세)을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령대별 사망률 자료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인구 십만명당 사망률(2,216.1)을 산출하여 적용함

○ 외래진료비 지원

- (1인당 외래진료 건수) 보건복지부 원자폭탄 피해자 진료비 지원사업비 산출 시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29명을 대상으로 연간 외래진료 건수를 1,700건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피해자 1인당 외래진료 건수를 산정하여 친생자에 적용
- (외래진료비 단가) 보건복지부 원자폭탄 피해자 진료비 지원사업비 산출식을 참고하여 추계 기간 중 2만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 추계 결과, 원자폭탄 피해자의 친생자가 이용하는 외래진료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73억 9,970만원으로 추계

[표 5] 원자폭탄 피해자 친생자 외래진료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친생자 수(명, A)	3,103	3,034	2,967	2,901	2,837	-	-
1인당 외래진료 건수(회, B)	58.6	58.6	58.6	58.6	58.6	-	-
외래진료비 단가(백만원, C)	0.02	0.02	0.02	0.02	0.02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A×B×C)	3637.6	3557.0	3478.2	3401.1	3325.7	17399.7	347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입원비 지원

- (1인당 입원건수) 보건복지부 원자폭탄 피해자 진료비 지원사업비 산출 시 건강수첩 미소지자 29명을 대상으로 연간 입원 건수를 90건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피해자 1인당 입원건수를 산정하여 친생자에 적용
- (입원비 단가) 보건복지부 원자폭탄 피해자 진료비 지원사업비 산출식을 참고하여 추계 기간 중 1일 입원비가 6만 2천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 추계 결과, 원자폭탄 피해자의 친생자에 입원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기간 28억 5,560만원으로 추계

[표 6] 원자폭탄 피해자 친생자 입원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친생자 수(명, A)	3,103	3,034	2,967	2,901	2,837	-	-
1인당 입원건수(회, B)	3.1	3.1	3.1	3.1	3.1	-	-
입원비 단가(백만원, C)	0.062	0.062	0.062	0.062	0.062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A×B×C)	597	583.8	570.8	558.2	545.8	2855.6	57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안 제14조의3, 안 제17조의2)

- 친생자 수와 대상자 수 비중을 곱하여 건강검진 건수를 산정하고, 이에 검진비 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친생자 수) 2026년 3월 기준 친생자 수 현황에 장례비 지원 추계 시 가정한 연도별 사망자 수를 고려하여 추계기간 친생자 수 산정
- (대상자 수 비중) 보건복지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 건강검진비 산출 시 건강검진 신청자를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29명) 중 20명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친생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 수 비중 산출
- (건강검진비 단가) 보건복지부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산출식을 참고하여 추계 기간 중 1인 건강검진 1회당 지원비용이 35만원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 추계 결과,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35억 8,230만원으로 산출

[표 7] 원자폭탄 피해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친생자 수(명, A)	3,103	3,034	2,967	2,901	2,837	—	—
대상자 수 비중(% , B)	69	69	69	69	69	—	—
건강검진비 단가(백만원, C)	0.35	0.35	0.35	0.35	0.35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A×B×C)	748.9	732.3	716.1	700.2	684.7	3582.3	71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이소임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소임	02-6788-4742	soimlee@assembly.go.kr